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예은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안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며, 제33조(지출의 방법)에 따라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은유치원은

1. 부정당채주 대금 지급

예은유치원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거래에 대한 정당 채주에게 교직원 이 개인이 대금을 선결제 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해당 직원의 개인계좌로 53건, 794,410원의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표1] 부정당채주 대금 지급 내역

[단위:원]

이체일자	입금계좌명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출금통장표시내용	이체금액	비고
2018/04/16	○○○	농협	XXXXXX-XX-XXXXXX	자연체험학습장퇴비	18,000원	
2018/04/21	○○○	농협	XXXXXX-XX-XXXXXX	유치원꽃화분	15,000원	
2018/04/25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13,500원	
2018/04/27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17,500원	
2018/05/08	○○○	농협	XXXXXX-XX-XXXXXX	○○○마트모종	21,500원	
2018/05/20	○○○	농협	XXXXXX-XX-XXXXXX	○○○축산유통	23,000원	
2018/06/05	○○○	농협	XXXXXX-XX-XXXXXX	○○건조대	44,820원	
2018/07/13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3,500원	
2018/07/19	○○○	농협	XXXXXX-XX-XXXXXX	○○○○칼갈이	12,000원	
2018/08/17	○○○	농협	XXXXXX-XX-XXXXXX	○○소방공사	70,000원	
2018/08/22	○○○	농협	XXXXXX-XX-XXXXXX	육선증편	22,020원	
2018/08/29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3,000원	
2018/08/30	○○○	농협	XXXXXX-XX-XXXXXX	어린이박물관주차료	6,000원	
2018/10/10	○○○	농협	XXXXXX-XX-XXXXXX	○○고양농산	13,980원	
2018/10/29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13,000원	
2018/11/16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2,500원	
2018/11/22	○○○	농협	XXXXXX-XX-XXXXXX	고양시청대형폐기물	5,000원	
2018/12/12	○○○	농협	XXXXXX-XX-XXXXXX	고양시청폐기물처리비	2,000원	
2019/01/21	○○○	농협	XXXXXX-XX-XXXXXX	○○퀵서비스	20,000원	
2019/02/07	○○○	농협	XXXXXX-XX-XXXXXX	○○문구	24,000원	
2019/02/08	○○○	농협	XXXXXX-XX-XXXXXX	○○퀵서비스	25,000원	
2019/02/12	○○○	농협	XXXXXX-XX-XXXXXX	○○문구	6,910원	
2019/03/08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3,000원	
2019/03/19	○○○	농협	XXXXXX-XX-XXXXXX	○○○	60,000원	
2019/03/19	○○○	농협	XXXXXX-XX-XXXXXX	○○○마트	8,000원	
2019/04/03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6,000원	
2019/04/08	○○○	농협	XXXXXX-XX-XXXXXX	석면교육연수비	20,000원	
2019/04/17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2,000원	
2019/04/23	○○○	농협	XXXXXX-XX-XXXXXX	○○전기살균등	14,000원	
2019/05/02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7,000원	
2019/05/13	○○○	농협	XXXXXX-XX-XXXXXX	○○○고추모종외	28,000원	
2019/06/27	○○○	농협	XXXXXX-XX-XXXXXX	(주)○○○마트	17,200원	
2019/06/28	○○○	농협	XXXXXX-XX-XXXXXX	서구청무인서류발급	4,000원	
2019/07/08	○○○	농협	XXXXXX-XX-XXXXXX	(주)○○○마트	8,940원	
2019/07/22	○○○	농협	XXXXXX-XX-XXXXXX	○마트단호박	2,980원	
2019/08/29	○○○	농협	XXXXXX-XX-XXXXXX	진보드물	30,000원	
2019/09/14	○○○	농협	XXXXXX-XX-XXXXXX	쌀가루공임	4,000원	
2019/09/16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5,900원	
2019/09/16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5,900원	

이체일자	입금계좌명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출금통장표시내용	이체금액	비고
2019/09/17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2,000원	
2019/10/16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3,500원	
2019/10/16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3,500원	
2019/10/21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3,000원	
2019/10/21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3,000원	
2019/11/07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2,000원	
2019/11/07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2,000원	
2019/11/18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6,000원	
2019/11/18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6,000원	
2019/12/06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4,000원	
2020/01/18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5,500원	
2020/02/04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5,000원	
2020/02/04	○○○	농협	XXXXXX-XX-XXXXXX	○○시장	5,000원	
2021/02/13	○○○	농협	XXXXXX-XX-XXXXXX	○○○쇼핑크레파스외	134,760원	

2.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예은유치원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임의단체인 ○○○○○ 연합회 2018년 회비 55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2] 2018년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내역

년월일	과목	적요	채주	지출번호	지출액(원)
2018-05-15	일반업무추진비	○○○○ 연합회비	○○○	B050032	550,000

※ 유치원회계 보전조치 : 550,000원

※ 감사통보 전, 부적정 집행액 전액 금550,000원 보전조치 완료(2021.8.2.)

조치할 사항 예은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 관 명 예은유치원
내 용

「유아교육법」제19조의3(운영위원회 설치 등), 「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르면 유아 수 100명 미만인 유치원에는 5명 이상 8명 이하 운영위원을 두며, 그중 학부모위원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교원위원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은유치원에서는 2018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연도 유아수 기준 5명 이상 8명이하의 운영위원을 두어야 함에도 운영위원회를 4명으로 과소하게 구성하고,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5:5(각2명)으로 부적정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은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차입금 운용 부적정
기 관 명 예은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8조(차입금)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는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고, 일시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동 규칙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에는 차입금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 사립유치원재정매뉴얼에 의하면 차입금은 제 1금융권 차입 및 사학진흥재단 용자를 원칙으로 하며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차입은 위 기관보다 이자가 낮을 때 가능하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에 따라 학교 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 모두 예산에 편성한 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다.

그런데 예은유치원에서는 운영비 부족에 따른 단기차입금을 아래 [표3]과 같이 운용하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차입액 및 상환액 규모를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2019학년도 차입금을 2020학년도에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상환한 사실이 있다.

[표3]유치원회계 차입금 운용 내역

[단위: 원]

일자	건명	채주	차입액	상환액	비고
2018-04-28	일시운영차입금	○○○	5,000,000		
2018-05-07	일시운영차입금 상환	○○○	0	5,000,000	
2019-03-12	상환금	○○○		3,000,000	
2019-04-25	차입금	○○○	4,500,000		
2019-04-25	차입금	○○○	5,500,000	0	경영자이전수입
2019-08-10	상환금	○○○		1,500,000	
2020-02-29	설치·경영자이전수입	○○○	3,325,417		
2020-03-09	(00029)단기 차입금 상환 지출결의	○○○	0	3,325,417	
2020-03-09	(00029)[반납결의]단기 차입금 상환 지출결의	○○○	1,121,274	0	
2020-03-09	(00521)단기 차입금 상환 지출결의	○○○	0	1,121,274	
2020-11-30	2020.11월 단기차입금 수입	○○○	2,000,000	0	
2021-02-25	[과오납반환결의]단기차입금 상환	○○○		2,000,000	

조치할 사항 예은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차입금 운용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